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지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53

제출연월일 : 2009. 11. 2.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로법」의 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손궤자부담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6조 및 제8조).

다. 도로복구 부담금 등 산출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9. 7. 24 ~ 2009. 8.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지부담금 등 장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명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중 "원인자등으"를 각각 "원인자"로 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원인자등"을 각각 "원인자"로 한다.
- 제3조제2항중 "원인자등은"을 "원인자는"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중 "법시행령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제 33조에 따라"로 한다.
- 제4조의 제목 "(부담금등 산정)"을 "(부담금 산정)"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중 "부담금등"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중 "부담금등"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부담금등 징수)"를 "(부담금 징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담금등 환부 및 추징)"을 "(부담금 환부 및 추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원인자등 확인)"을 "(원인자 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원인자등을"을 "원인자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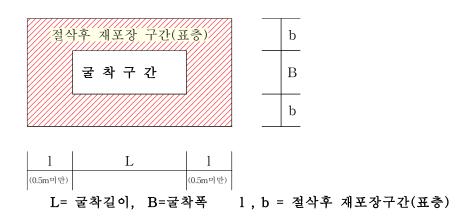
1.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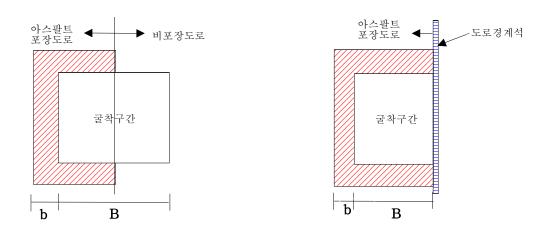
		보	도
구분	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블록 및 타일류	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 착면적	1.2m × 1.2m	1.0m × 1.0m	1.2m × 1.2m
최소 굴착폭	1.2m	1.0m	1.2m
복구 비용	 ○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 포장 노면별 굴 착복구 기준의 시공 비용 -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 복구시 비용은 도로가로방향으로는 해당차로의 전체폭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 부터 0.5미터 미만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 ○ 콘크리트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비(전체 표층용 블록 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타일류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 굴착구간의 기층 및 표 층시공비

3. 복구면적

1) 표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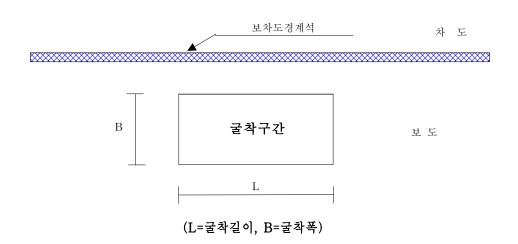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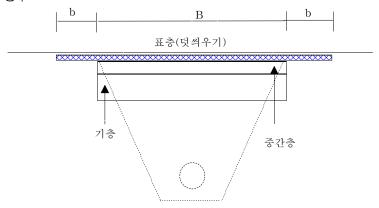
B=굴착폭 b=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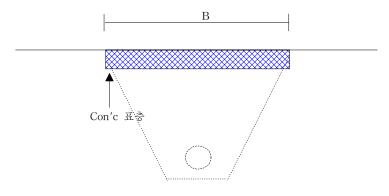


4. 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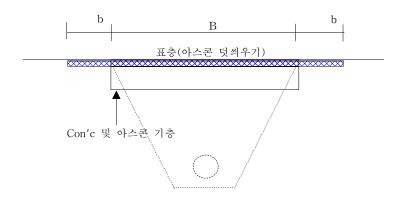
- 1) 차 도
-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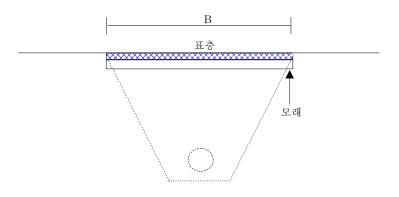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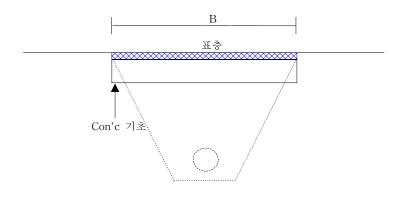


2) 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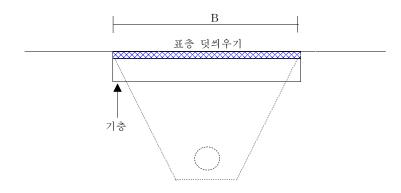
① 블 록 류



② 타 일 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도로복구 부담금 산출기준에 준한다.
- 6.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측구, 식수대, 암거, 교량, 표지판, 교통시설물,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별도로 산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등" 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 및 도로를 손궤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말한다. 4. "굴착구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복구 공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u>원인자등</u> 의 요 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원인자</u>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원인자

②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u>원인자등으</u>	②원인자
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	
을 징구하여야 하며, <u>원인자등은</u> 「건	원인자는
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종에 부	
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	
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③시장은 <u>원인자등으</u> 로부터 공사완료 보	③ <u>원인자</u>
고가 있을 경우에는 <u>법시행령 제24조의7</u>	<u>「도로법 시행령」 제33조</u>
<u>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등으</u> 로부터 준	에 따라 원인자
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 ①원인자부담금(이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u> "부담금"이라 한다)</u>
합계액으로 한다.	
② <u>부담금등</u> 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②부담금
의하며,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	
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③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	3
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u>부담금등</u> 은 시장	
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 5조(<u>부담금등 징수</u>) ①시장은 도로복	제5조 <u>(부담금 징수)</u> ①
구공사에 소요되는 <u>부담금등</u> 을 <u>원인자</u>	
<u>등</u> 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u>부담금등</u> 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	② <u>부담금</u>
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u>각 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각 호의 어느 하나</u>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 6조(부담금등 환부 및 추징) ①시장은	제6조 <u>(</u> 부담금 환부 및 추징) ①
기 납부된 <u>부담금등</u> 을 다음 <u>각 호의 1</u>	<u></u> 부담금각 호의 어느 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u>부담금등</u>	<u>나부담금</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u>부담금등</u> 을 납부한 자가 당	② <u>부담금</u>
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	
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	
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	
여야 한다.	
③ <u>부담금등</u> 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③ <u>부담금</u>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등 확인) ①시장은 정당한	제 8조(원인자 확인) 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손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등을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u>원인자등</u> 의 확인에 장기간이	②원인자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	
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	
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u>부담금등</u> 을 추	
징하여야 한다.	
제 9조(준용) <u>부담금등</u> 의 징수에 관하여	제 9조(준용) <u>부담금</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현 행

【별표 1】

도로 복구 부담금등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생략)
-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구분	구분 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보 도
	1-(1-2- 2 2-1-0-1	(생략)
최소굴 착면적	(생략)	(생략)
최소 굴착폭	(생략)	(생략)
	O 아스팔트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기층, 중간층 시공비 및 별표 2 포장 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의 표층 비용	○ (생략)
복구 비용	<u>이 콘크리트 포장도로</u>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 트인 경우) - 굴착구간의 기층 시공비 및 별표2 포장노면별 굴 착복구 기준의 표층 비용	

개 정 안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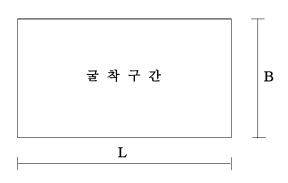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P분 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보 도
구분 		(현행과 같음)
최소굴 착면적	(생략)	(현행과 같음)
최소 굴착폭	(생략)	(현행과 같음)
복구 비용	○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 포장 노면별 굴 착복구 기준의 시공 비용 -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 복구시 비용 은 도로가로방향으로는 해당차로의 전체폭(차 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 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 부터 0.5미터 미만 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 ○ 콘크리트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O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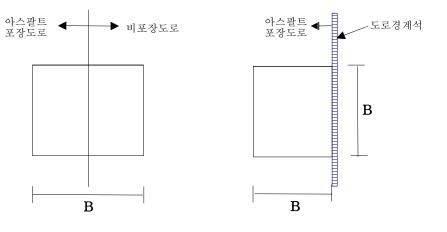
3. 복구면적

1) 표준평면도



(L=굴착길이, B=굴착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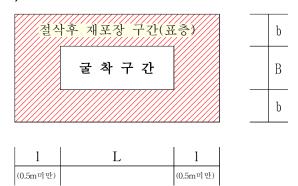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3) (생략)

3. 복구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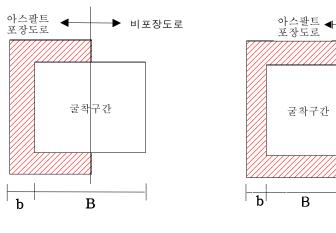
1) 표준평면도



L= 굴착길이, B=굴착폭 1,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

-도로경계석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 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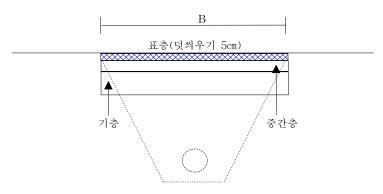
B=굴착폭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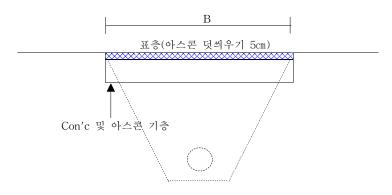
3) (현행과 같음)

4. 복구단면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 ② (생략)
-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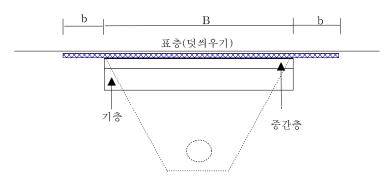


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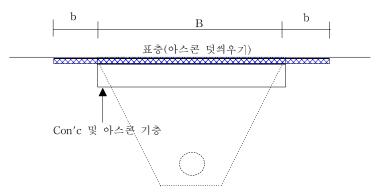
-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도로복구 <u>부담금등</u> 산출기준에 준한다.
- 6. (생략)

4. 복구단면

- 1) 차 도
-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2) (현행과 같음)
-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도로복구 <u>부담금</u> 산출기준에 준한다.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 제33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 ·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전기통신관·송열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 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6. 도로의 복구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 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